

제2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오현숙 의원 발의】



2019. 3. 22.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90호로 2019년 3월 14일 오현숙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영등포구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노인과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여 노인과
임산부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마. 차량의 이동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9. 3. 11. ~ 3. 15.)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임산부 운전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에서는 노인·임산부 주차우선구역 설치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적용범위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청사 및 공공시설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과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위반 차량의 이동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현재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인과 임산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노인·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노인·임산부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회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주차장별 규모, 운영현황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5. 1. 28.]